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동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설중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제정된 조례임
- 금번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등의 설치 허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별표 내용중 상호 유사성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조문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접객업에 대한 설치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에 “허용”이란 용어를 “심의”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임을 분명히 함.
-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 결정의 별표1 내용중 7호 내용이 8, 9호 내용과 상호 연계되어 규제완화를 위하여 7호 내용을 삭제 (별표1)
- 식품접객업의 경우 건축연면적 120㎡ 미만에 한해 허용하고 건축연면적 12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1호)

□ 검토의견

- 조례 제명을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에서 “허용”이란 용어를 “심의”로 변경한 것은 동 조례가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심사기준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자칫 허용조례라고 하여 제명으로 인한 오해를 분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 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는 제1항에서 정한 별표1의 허용지역외의 지역이라도 설치 가능한 조건을 정하면서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면적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 120㎡미만의 음식점”을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음식점 다만, 건축연면적이 120㎡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개정하여 120㎡ 이상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인 미풍양속,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여부, 환경오염, 주민정서의 감안 등의 별표 1의 8~9호에서 정한사항은 적용치 않음으로써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사료됨.
- 또한 별표1의 7호인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은 8~9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혼동의 여지가 있어 7호 내용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지난 4월 파주시로부터 숙박업 및 음식점설치 불허 처분을 받았던 일산구 일산2동 정이봉외 6인이 동 조례 별표1의 7~9호의 조항은 인허가 기관의 판단에 맡겨 잘 보이면 허가하고 잘못보이면 불허라는 이중잣대로 활용하는 독소 조항으로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으며
- 탄현면 성동리 김길수외 78인으로부터는 농촌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는 지하수 고갈, 식수부족현상,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오염과 혐오시설의 설치로 위화감 조성, 주민 정서의 위해 등의 이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불허가를 요망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첨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